

최신 판례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독-943, 2023.05.17

질 의

- 질의인은 '22.00.00.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22.00.0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업종정정을 하였음
- * 질의인은 당초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업종을 착오 신청한 것이라고 함

질의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대상업종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한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신고라도 감액 경정청구 가능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과-182, 2023.03.08

질 의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서면법규소득-914, 2023.08.17

질 의

-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계약기간 10년 이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91의16①)
 -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91의16④)
- 한편, 청년인 거주자가 위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저축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바(조세특례제한법 91의20①)
 - 이 경우 해당 계약 해지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91의20④)

질의

-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

는 경우 전부를 의미)

(제2안)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부동산-3960, 2023.03.10

질 의

-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4호)는 임대등록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1호)는 거주하다가 임대무기간의 종료로 자동말소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A주택 전체를 거주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5<20>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